

CONTACT



변호사 정환

T: 02.772.4940
E: hwj@leeko.com

변호사 이준택

T: 02.772.4371
E: jl@leeko.com

변호사 김지훈

T: 02.772.5978
E: jhg@leeko.com**‘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’ 등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·개정안 행정예고**

공정거래위원회(이하 **공정위**)는 2021. 12. 30. 시행되는 개정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**개정 공정거래법**)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분야의 8개 행정규칙 제·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구체적으로 관련된 개정 ‘공정거래법’의 주요 개정 내용은 (i)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, (ii) 경쟁사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으면서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담합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, (iii) 담합 인가사유 3가지(산업합리화, 불황극복, 산업구조조정)를 ‘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, 이러한 개정 내용을 8개 행정규칙 제·개정안에 명시하였습니다. 공정위는 2021. 11. 3.~2021. 11. 23.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,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1. 12. 30. 개정안을 확정·시행할 계획입니다.

8개 행정규칙 제·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I. 행정규칙 제·개정안의 주요 내용**1. 「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」(이하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) 제정안**

■ ‘정보교환’의 정의 규정 신설

정보교환의 개념

- ‘정보교환’이란,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·간접적으로 가격,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
 -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였으나, 이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음
 -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에 해당하지 않음

■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의 요건 등

| 요건 | 구체적인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'경쟁상 민감한 정보'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의 존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연락(합의서, 구두 약속)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 성립 ■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·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■ 단, 사업자가 정보 수신 거부의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 송신을 신고한 경우,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합의가 없거나 해당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봄 |
| ②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의 부당한 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시장상황,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, 점유율, 정보의 특성, 정보교환의 양태,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|
| ③ 효율성 증대효과의 부존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i)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, (ii) 그러한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, (iii)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, 정보교환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|

■ 정보교환에 의한 가격 등 합의 추정 관련

- 가격 등 관련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, ① 경쟁사 간 경쟁변수(가격 등)의 외형상 일치와 있고, ②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'필요한 정보의 교환'이 있어야 함
- 다만 (합의가 추정되더라도) 사업자는 (i) 소송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또는 (ii)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, (iii)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 부인 가능

| 요건 | 구체적인 내용 |
|--------------|--|
| ① 외형상 일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쟁변수의 변동폭·시점이 동일할수록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완전히 동일해야지만 외형상 일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(예: 경쟁변수에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→ 외형상 일치 존재) ■ '가격을 함께 인상하자'는 정도의 이른바 느슨한 합의인 경우는 요구되는 경쟁변수의 동일성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음 |
| ② 필요한 정보의 교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i) 교환된 정보가 가격, 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 경우, (ii) 의사결정 시점 직전에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, (iii)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이 유사할수록, '필요한 정보의 교환'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|

2. 「공동행위 심사기준」 일부 개정안

■ 합의 추정 사유 등 관련 내용 개편

| 현행 심사기준 | 개정안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합의 추정 사유: 외형상 일치의 존재,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합의 추정 사유: 외형상 일치의 존재,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,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형상 일치 여부의 판단기준, 외형상 일치의 예시, 합의 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의 예시 보강('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' 제정안과 내용 동일) |

■ 거래조건 담합 예시 정비

| 현행 심사기준 | 개정안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래조건 담합의 예시: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, 거래의 장소, 거래의 방법, 운송조건의 담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래조건 담합의 예시: 판매장려금, 출하장려금, 위탁수수료, 무료 상품·서비스 제공 여부,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·서비스 공급방식, 운송조건 |

■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조항 신설 반영

| 현행 심사기준 | 개정안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담합의 유형으로 가격담합, 수량담합, 시장분할 담합, 입찰담합 등을 열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담합의 유형에 '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'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보교환의 개념 명시('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' 제정안과 내용 동일) |

3. 「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」 일부 개정안

■ 개정 '공정거래법'상 공동행위 인가사유 중 산업합리화, 불황극복, 산업구조조정이 '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'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가사유의 기재사항 정리

|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관련 필요 기재사항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실시하고자 하는 공동행위 내용, 방법 등 2. 관련 업종 현황 3.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국내외 경제여건 4. 최근 3년간 업종 손익현황 및 사업자 수 변동 5. 최근 3년간 생산능력, 수급현황, 유통단계별 가격 6. 당해 상품·용역, 대체제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7. 당해 상품·용역의 가격 및 생산성 관련 국제비교자료 8. 참가자의 불황극복 및 능률 향상 위한 자구 노력 9.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에의 영향 |

4. 「사업자단체활동 심사지침」 일부 개정안

■ 금지되는 사업자단체의 정보교환 행위 예시 규정

| 현행 심사기준 | 개정안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예시 열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사업자단체가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'의 예시 추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 (가격, 생산량, 원가, 출고·재고·판매량 또는 거래조건·지급조건)를 타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들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 |

5. 「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」 일부 개정안

■ 조사개시일 규정 삭제

| 현행 심사기준 | 개정안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진신고된 담합 사건의 조사개시일(공정위의 현장조사일, 자료제출요구일, 출석요구일) 규정 존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진신고된 담합 사건의 조사개시일 규정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참고로 시행령에서 자진신고 사건의 조사개시일을 '자진신고접수일'로 규정하고 있음(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 제2호) |

■ 감면신청인 추가 제한기간 규정

| 현행 심사기준 | 개정안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독감면 신청 후 이를 공동감면으로 보정하려는 경우, 그 보정은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동감면 신청 후 신청인 추가 보정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X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감면신청인 추가 보정 사유는 형식 불문하고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정 고시 시행일(2021. 12. 30.) 이후 최초 감면신청부터 적용 |

■ 감면신청 순위 승계규정 정비

| 현행 심사기준 | 개정안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순위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후순위 감면신청인은 선순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순위의 감면요건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규정의 구조 간명하게 정비 ■ 승계에외규정은 2순위 신청인의 |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충족하여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승계에외규정: 1순위 감면신청이 신청인의 귀책사유(공동행위 미종단, 불성실협조)로 기각되고, 2순위 신청인이 1순위 요건 중 '불충분성 요건(감면신청시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)'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, 2순위 신청인이 1순위를 승계하지 않고 2순위 요건 충족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음 | <p>1순위 승계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</p>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6. 「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」, 「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」, 「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」 일부 개정안

- (실체적 내용에 대한 개정 없이) '공정거래법'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반영함

II. 시사점

2021. 12. 30. 시행 예정인 개정 '공정거래법'에서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행위가 규율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공정위의 카르텔 분야 법 집행 방식과 기업의 compliance risk 수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8개 행정규칙 제·개정안을 통해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방향성을 살펴보고 기업 내부적으로 정보교환/경쟁사 접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등 '공정거래법'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, 관련 자문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(유) 광장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법무법인(유)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[수신거부](#)를 클릭해 주십시오.